

의안번호	2215671
의 퇴 인	이원택의원
회 답 일	2026. 4. 3.
추 계 번호	25B7355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1조의2 신설(전기설비 설치의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·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용전기설비(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·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(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1조의2 신설(전기설비 설치의 지원)	- 제3호: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¹⁾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

1)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²⁾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식업자의 소득·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한 양식업자에게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지원의 범위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³⁾하고 있고, 향후 양식업자의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일반용전기설비·자가용전기설비 설치 수요와 설치하려는 일반용전기설비·자가용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 등에 관한 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신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수소에너지 나. 연료전지

다. 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(重質殘渣油)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라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
2. "재생에너지"란 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태양에너지 나. 풍력 다. 수력 라. 해양에너지 마. 지열에너지

바.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사. 폐기물에너지(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아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
2) 「전기사업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6. "전기설비"란 발전·송전·변전·배전·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·기구·댐·수로·저수지·전선로·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(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건설되는 댐·저수지와 선박·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. 일반용전기설비 다. 자가용전기설비

17. "전기사업용전기설비"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.

18. "일반용전기설비"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.

19. "자가용전기설비"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.

3) 제61조의2(전기설비 설치의 지원)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양식업계 경영현황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□ 어가경제

- 어가 평균소득은 6,365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,646만원 대비 73.6% 수준에 불과하며, 어가부채는 작년 대비 6.5% 증가*하는 등 다수의 영세어업인들은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음

* 출처: 국가데이터처,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

□ 경영여건

- 고유가가 지속*되고 있으며, 전기료 인상**, 사료비 증가 등으로 양식 경영 여건은 악화되는 추세

* 어업용 경유(고유황경유) 평균가격(원/L): ('20) 455 → ('21) 603 → ('22) 1,149 → ('23) 957 → ('24) 895 → ('25) 853

** '22년 1월 대비 농사용(을) 전력량 요금 31.7원, 92.7% 인상(34.2→65.8원/kWh)

□ 양식수산물 수급

- 해외시장 열풍이 있는 '김'을 제외한 대부분 양식품목의 시장 규모는 정체 중으로,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대규모 폐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양성물량이 적체되어 있어 양식수산물 가격 변동은 제한적

< 주요 양식품목 고수온 피해량 및 가격 >

구분	'25년 고수온 피해규모 ('25.12월 기준)	산지가격 (원/kg)		
		'23.12월	'24.12월	'25.12월
광어	210만미	14,653	17,393	16,486
굴	-	11,722	10,632	8,994
전복	88만마리	28,174	21,565	18,870

* 출처: 해양수산부 내부 통계자료, KMI 수산업관측센터

□ 고수온 피해복구

-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'기타보전금'('24~'25, 315억원), '양식재해보험비' 등을 지급 중으로, 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수백억의 예산 집행 중

□ 향후계획

- 양식품목별 양식 적합지를 고려한 양식장 재배치·폐업,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식품종으로 전환 등 '양식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